

# 「2026년 경기도 유망 기후테크 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」 기업 모집 공고(안)

성장잠재력을 갖춘 도내 기후테크 선도기업을 발굴하여 중점 지원하고자 2026년 「경기도 유망기후테크 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도내 기후테크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. 3. 6.

경기도지사

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

## 1

### 사업 개요

- 사업명: 2026년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
- 신청대상: 기후테크(클린·카본·푸드·지오·에코)분야 경기도 중소·중견기업

#### < 신청 자격 세부 조건 >

- ▶ 기후테크 산업을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영위하는 기업(신청가능 업력 : ~ 2023. 3.)
- ▶ 접수일 기준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·중견 기업
  - ※ 단, 협약체결일 전일까지 경기도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 완료한 기업은 인정(확약서 제출 必)
- ▶ '경기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' 선정되었던 기업도 지원 가능
  - ※ 단, 동일연도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'26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사업 선정 기업은 제외

- 지정기간: 3년(2·3차년도는 연차 점검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)
- 지정규모: 10개사
- 지정혜택: 도 유망기업 지정서 및 현판 수여, 사업화 자금 지원, 프로그램 제공

구분	사업화 자금 지원 (기업당 3,000만원)	프로그램 지원	
		해외 판로개척	중소기업 기술마켓 제품인증 등록
주요 내용	시제품 제작, 산업재산권 권리화, 홍보 등 6개 분야	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, 해외 협업프로그램 참여 지원	중소기업 기술마켓 제품인증 심의 및 지정 지원

## 2

## 지원 세부내용

### ○ 지원분야

1. 사업화 자금 지원(기업당 연간 1천만원, 3년간 최대 3천만원 지원, 사후정산)	
지원분야	지원내용
① 시제품 제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, 부품비</li> <li>· 기능·성능 개선을 위한 금형, 워킹모업 제작</li> <li>· 국내외 신뢰성 평가, 성능시험 성적서 발급 비용</li> <li>· 현장 실증(Pilot Test) 재료비 및 장비 임차료</li> </ul>
② 산업재산권 권리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국내·외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 출원 등 관련 비용</li> <li>· PCT 국제출원 등 지식재산권 확보 관련 비용</li> <li>· 해당 국가별 필수 인증(CE, FCC, UL 등) 취득비</li> <li>· 녹색기술인증, 신기술(NET/NEP) 인증 취득 컨설팅</li> </ul>
③ 홍보·마케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기업 및 제품 홍보물 제작(영상, 홈페이지, 브로슈어 등)</li> <li>· 외국어 홍보물 제작 및 번역</li> <li>· 국내·외 광고 및 온라인 마케팅 등 홍보 활동</li> </ul>
④ 판로개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국내·외 전시회 참가 비용(부스비, 설치비, 운송비 등)</li> <li>· 벤처나라, 나라장터 등록 행정 지원</li> <li>·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(MAS) 등록 컨설팅 지원</li> <li>· 공공조달 및 민간시장 진입을 위한 판로 개척 활동</li> </ul>
⑤ 경영·규제 컨설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기술사업화, 사업모델 고도화 컨설팅</li> <li>· 탄소배출량 산정 및 LCA(전생애주기평가) 컨설팅</li> <li>· EU CBAM(탄소국경조정제도) 대응 보고서 작성 지원</li> <li>· 공급망 실사 대응 및 ESG 경영진단 컨설팅</li> <li>· 기술신용평가(TCB) 수수료 지원(대출 및 보증 연계용)</li> <li>· 상장(IPO) 사전 준비 및 내부통제 컨설팅</li> <li>· 기타 경영전략, 투자유치, 회계·법률 자문 등 관련 비용</li> </ul>
⑥ 전문인력 인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사업화 과제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</li> <li>※ 대표자, 과제 미참여자는 인건비 지급 불가</li> </ul>
2. 프로그램 지원 * 지원 프로그램은 변동될 수 있음	
지원분야	지원내용
① 해외 판로개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해외 전시회 공동참여 지원</li> <li>· 해외 협업프로그램 참여 지원</li> <li>※ 해외 프로그램은 유망기업 선정평가 고득점 순위대로 우선권 부여</li> </ul>
② 중소기업 기술마켓 혁신제품 인증·등록 * 중소기업 제품에 한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중소기업 기술마켓 '인증기업' 등록 지원</li> <li>· 인증제품의 '혁신제품' 지정 추천 지원</li> </ul>

## 3

## 기업 선정절차

구분	내용	비고	일정
① 사업공고	경기도(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) 누리집 공고	전담기관 (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)	'26.3.6.
② 신청접수	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	신청기업 → 전담기관	'26.3.6. ~ 3.20. 16:00
③ 서류평가(1차) 결과발표	제출서류, 자격요건, 신청자격 제한 대상 여부, 정량평가 검토 (15개사 선정)	전담기관	'26.3.25.
④ 발표평가(2차)	사업성, 기술성, 성장성 등 기업 역량 종합 평가 (70점 미만은 탈락처리하고, 70점 이상은 종합 평가점수 산정 후 우선순위 결정)	전담기관 (평가위원회)	'26.3.27. ~ 3.30.
⑤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선정결과 개별통보</li> <li>• 협약체결</li> </ul>	지정기업 → 전담기관	'26.3.31. ~ .4.3.
⑥ 기업 지정서 및 현판수여식 개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업 지정서 및 현판수여식 개최</li> </ul>	경기도, 전담기관, 지정기업	'26.4월
⑦ 사업 수행	계획서에 따른 사업 수행	지정기업	~'26.12월
⑧ 현장 점검	목표 달성 여부 등 추진과정 점검	지정기업 → 전담기관	'26.6~8월
⑨ 간담회(성과공유회) 개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업 당해연도 사업 성과 및 차년도 추진계획 공유</li> <li>• 결과는 향후 지원프로그램 참여기업 선발에 활용</li> </ul>	지정기업 → 전담기관	'26.12월
⑩ 정산 및 지원금 지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정산서 제출 및 검토</li> <li>• 지원금 지급</li> </ul>	전담기관 → 지정기업	'26.12월

※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

## 4

## 평가 방법

- 최종선정: 1차평가 + 2차평가 + 가산점 합산 **70점 이상** 고득점순 선정
- 1차 서류평가: 40점 만점(적격성 검토, 정량평가)

구 분	평가항목	점수	산출방식	평가지표 및 배점				
				가	나	다	라	마
경영일반 (25)	매출액	5	당기매출액	100억원 이상	42억원~100억원미만	19억원~42억원미만	8억원~19억원미만	8억원미만
	영업이익률	5	영업이익/매출액	11.5%이상	7.3%이상~11.5%미만	4.5%이상~7.3%미만	1.6%이상~4.5%미만	1.6%미만
	부채비율	5	부채총계/자본총계	60%미만	60%이상~127%미만	127%이상~214%미만	214%이상~379%미만	379%이상
	수출액비율	5	당기수출액/당기매출액	20%이상	15%이상~20%미만	10%이상~15%미만	5%이상~10%미만	5%미만
	상시고용인원	5	당기말 상시근로자수	40명이상	30명~39명	20명~29명	10명~19명	10명미만
유망성 (15)	매출액증가율	5	(당기전기 매출액)/전기매출액	40%이상	30%이상~40%미만	20%이상~30%미만	10%이상~20%미만	10%미만
	기술개발 투자율	10	연구개발(투자)비/당기매출액	6.4%이상	2.9%이상~6.4%미만	1.2%이상~2.9%미만	0.2%이상~1.2%미만	0.2%미만

- 2차 발표평가: 60점 만점(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발표 평가 진행)

구 분	평가항목	점수	점수				
			가	나	다	라	마
사업성 (20)	비즈니스 전략	10	사업모델 및 비즈니스 목표의 명확성 및 적정성				
	시장성	5	내외부 시장 환경 및 기술/제품의 개발 필요성, 경쟁력				
	전문성	5	기술/제품의 지식재산권 등 보유 정도				
기술성 (20)	기술 경쟁력	10	기술/제품의 독창성, 차별성, 혁신성				
	기술 실용성	5	기술/제품의 실용화 단계, 구현 가능성				
	기술개발 노력	5	향후 기술개발 계획의 구체성				
성장성 (10)	시장확대 전략	5	국내외 판로개척 노력 및 향후 시장 창출 가능성				
	사업확대 전략	5	사업 확대 및 투자 확대 계획				
기대효과 (10)	발전 가능성	5	기후테크 분야 지속가능성				
	기후대응 효과	5	탄소 감축 파급효과 및 기후 변화 대응 기여도				

- 가산점: 가점 최대 3점

구 분	평가항목	점수	산출방식	평가지표 및 배점
가산점(3)	혁신기술 및 우수기업 인증	3	가점서류 보유	- 인증서당 각 1점 - 2025 기후테크 콘퍼런스 수상기업 1점 - 주4.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1점

## 5

# 신청 자격 및 요건

○ 신청자격: 유망 기후 기술(제품)·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도내 중소·중견기업

### < 신청 자격 세부 조건 >

- ▶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자료(붙임 1)에 명시된 유형 및 세부분류에 속하는 기후테크 산업을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영위하는 기업
- ▶ 공고일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·중견 기업
  - ※ 단, 협약체결일 전까지 경기도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 완료한 기업은 인정(확약서 제출 必)
- **개인사업자** : 사업자등록증 상 '개업연월일' 기준
- **법인사업자** : 법인등기부등본 상 '법인설립등기일' 기준
  - \* 개인·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'신청 자격'에 해당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-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,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요건 검토

\* 공고일 기준 상기 조건을 만족해야함

○ 가점(최종 평가단계에서 최대 3점 부여)

### < 가점 사항 >

① 기후테크 분야 혁신 기술 및 우수기업 인증서 보유기업(각 1점)

\* 저탄소제품인증, 녹색인증,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, 환경성적표지,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, 경기도 유망중소기업, 경기도우수여성기업,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, 경기도일하기좋은기업, 경기도착한기업, 경기도수출프론티어기업, G-Star기업, 우수 환경서비스기업

② 2025 기후테크 콘퍼런스 수상기업(1점)

\* 수상기업 정의: 기후테크 경진대회 또는 탄소중립펀드 투자 유치피칭데이에서 수상한 기업

③ 「경기도 주 4.5일제 시범사업」 참여기업(1점)

\* 공고일 기준 상기 조건을 만족한 기업은 최종평가에서 가점 최대 3점 부여 예정

○ 지정 제외 대상(공고일 기준)

\* 법인인 기업의 경우,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
-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및 전산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
- ②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경기도 사업화 지원 과제에 참여(과제 진행) 중인 자(기업)
-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

< ③ 조건 예외 대상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④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(기업)

< ④ 조건 예외 대상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
⑤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·폐업 중인 기업

⑥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기업

⑦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기업

⑧ 「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에 적용되는 법위반에 따라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

○ 경기도 법위반 조회 분야(시행근거 : 경기도 법 위반기업에 대한 조례)

-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1) (공정) ① 공정거래법,  | ② 하도급법,    | ③ 표시광고법             |
| 2) (노동) ④ 근로기준법,  | ⑤ 산업안전보건법  |                     |
| 3) (환경) ⑥ 폐기물관리법, | ⑦ 대기환경보전법, | ⑧ 소음진동관리법, ⑨ 물환경보전법 |
| 4) (납세) ⑩ 국세기본법,  | ⑪ 지방세기본법   |                     |

○ 유망 기후테크 기업 지정 취소사항

- 상기 공고 내용 중 '지정 제외 대상'에 해당하는 기업
- 유망 기후테크 기업 지정 후에라도 상기 공고 내용 중 '지정 제외 대상' 사유 발생 시 지정 취소 가능 (\* 연중 수시 점검 예정)
- 유망 기후테크 기업 지정 후에라도 경기도 법 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 지원 조례에 따른 위반 사실 여부 발생 시, 절차에 따라 지정 취소, 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경기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여부 결정 (붙임2 참고)
-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중도 포기 할 경우, 유망기업 지정 취소 및 향후 3년간 본 기관이 추진하는 관련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, 당해연도 사업비는 지급하지 않음

## 6

### 유의사항

#### ○ 신청 관련 유의사항

- 제출 서류는 접수일 기준 유효하고(각종 인증서류의 효력 유효기간 내),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한 서류에 한해 인정함
- 제출서류 검토 시 미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
  - \* 선택(가점) 서류 누락 및 미제출의 경우 별도로 보완 요청하지 않으며, 접수기간 이후 제출한 건은 불인정

#### ○ 유망 기후테크 기업 지정 이후 유의사항

- 기업정보의 주요 변경사항(회사명, 주소, 담당자 등)은 즉시 통보하여야 함
- 지원성과 및 만족도 조사, 현장점검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

## 7

### 접수방법 및 문의처

○ 접수기간: 2026. 3. 6.(금) ~ 3. 20.(금) 16:00까지

○ 접수방법: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이메일 제출(kjj@ggeea.or.kr)

※ 서류 제출 시, 압축폴더(폴더명: 기업명.zip) 내 파일명을 아래와 같이 저장하여 제출 必

- ※※ 저장 예시: 1. 제출서식 일체\_기업명  
2. 회사 소개서\_기업명

○ 문의처: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☎ 031-985-0296/0151

○ 제출서류: 신청서 참조

○ 기후테크: 기후 변화 대응·적응 등 기후 관련 혁신 기술

**<기후테크 기술 분류>**

구분	개념	세부분류	
1. 클린테크	재생·대체 에너지 생산 및 분산화	재생에너지	재생에너지 생산
		에너지신산업	가상발전소, 분산형 에너지공장
			송배전
			에너지 디지털화 및 효율화
		탈탄소에너지	원전
			SMR
수소			
핵융합			
기타 대체에너지원	에너지 저장장치 및 차세대 배터리		
에너지저장	에너지 저장장치 및 차세대 배터리	직접포집(DAC)	
2. 카본테크	공기 중 탄소포집·저장 및 탄소감축 기술 개발	탄소포집	CCUS
		공정혁신	생물학적 탄소제거
			제조업 공정 개선
		모빌리티	탄소저감 연·원료대체
			전기차
			차량용 배터리
물류			
퍼스널 모빌리티	자원 재활용		
3. 에코테크	자원순환, 저탄소 원료 및 친환경제품개발	자원순환	업사이클링
			폐자원 원료화
			에너지 회수
			폐기물 배출량 감축
		폐기물 절감 친환경	폐기물 관리시스템
			친환경소재 사용 제품
4. 푸드테크	식품 생산·소비 및 작물재배과정 중 탄소감축	대체식품	대체육
			세포배양육
			대체유·대체아이스크림
		스마트 식품	음식물쓰레기 저감
			친환경 포장
			식품 부산물 활용
애그테크	친환경 농업		
	대체비료		
	스마트팜		
5. 지오테크	탄소관측·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활용 사업화	탄소 데이터	기타 애그테크
			탄소관측 및 측정
			탄소 회계
		기후데이터	탄소컨설팅 및 배출권 거래
			기후감시·예측 및 컨설팅
		기후적응	기상·재난 정보
디지털 트윈			
물산업			
	재난방지		
	기후변화 적응 시설·시스템		

경기도 고시 제2025-23호

**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**

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기업선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「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. 1. 17.  
경 기 도 지 사

1. 추진목적 :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 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1. 적용대상 :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
  - (도내 기업) 등기부등록상 주 사무소, 영업소,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
1. 적용사업 : 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,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적용 제외
  - 가. 제외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음
  - 나. 사업유형별 조례 적용 제외사업
    - 1) (계도·개선사업)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
    - 2) (사업운영비·소액사업)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, 소액·다수기업 지원사업
    - 3) (비경쟁사업) 기업수요가 비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
    - 4) (자금·용자지원 사업)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
    - 5) (시·군 보조(매칭) 사업)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른 시군 지원사업
    - 6) (소상공인 지원 사업)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
    - 7) (투자유치 사업)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(인센티브) 사업
4. 위반사실 적용법률 : 공정, 노동, 환경, 납세 분야 11개 법률
  - 가. 적용법률
 

1) (공정) ① 공정거래법	② 하도급법	③ 표시광고법
2) (노동) ④ 근로기준법	⑤ 산업안전보건법	
3) (환경) ⑥ 폐기물관리법	⑦ 대기환경보전법	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
4) (납세) ⑩ 국세기본법	⑪ 지방세기본법	
  - 나. 위반 사실 적용 법률은 사업 부서별(사업별) 특성에 따라 지침·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
5. 위반사실 조회기간 : 사업 공모일(모집일) 기준 2년 이내
  - 가.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, 과징금, 과태료
  - 나.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·고발건은 확정 판결 확인 시 제한기준 적용
6. 사업참여 제한조건 : 법 위반 사실 확인시(1회 이상) 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
  - 가.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[법위반사실여부 협약서(서식2) 내용과 상이] 사업 취소·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
  - 나.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(사업별)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
7. 법위반사실 확인 : 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
  - 가. (공정)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처분내역 조회
  - 나. (노동)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조회
  - 다. (환경) 기업 소재지 관할 시·군 조회

라. (납세)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확인

8. 이의 및 구제신청 : 법 위반 사실로 제한 기준 적용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대상자는 소명 내용이 포함된 이의 및 구제신청서(서식3) 제출

가. 사업자선정위원회 등(실국 또는 수탁기관)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(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) 사업자 선정 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

※ 기업의 권리구제,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 기한 연장 가능하다. 삭제

9. 제출서류 :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서식1), 기업의 법위반사실(부존재) 여부 확인서(서식2)

10. 고시 효력일 : 고시일 ~ 차기 고시일 전까지

11. 문의처 :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(☎ 031-8030-2992, -2995)

- 붙임 1. (서식1)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 
2. (서식2) 기업의 법위반 사실(부존재) 여부 확인서  
3. (서식3) 이의 및 구제신청서

## 참고

#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기업 인센티브

○ 유망기후테크 기업 지정 시 인센티브 13종

지원기관		인센티브
경기도	기후 환경정책과	•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기업 지정서 및 현판 수여
		•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기업 지정 및 지원 사업비 지원
		•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BI사용권 부여(인증유효기간에 한함)
		• 기후테크 콘퍼런스 전시 참가 시 우선 선정
		•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 금융지원 대상 포함
		•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연구개발 및 환경기술 컨설팅 우선 선정
	환경 보건안전과	• 우수 환경서비스기업 신청 시 가점 부여(1점)
	기업육성과	•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(3점)
		•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(2점)
		• 경기도 스타기업 선정 신청 시 가점 부여(1점)
•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신청 시 가점 부여(1점)		
신용보증재단	•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시 가점 부여(5점)	
	• 신용보증 평가 시 가점 부여(1점)	